

머 리 말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 이래 2007년 현재 그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법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생활법률을 강의함과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코너를 마련하는 등 법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는 그 동안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그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 조기정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감수한 전현준 특수법령과 과장, 집필을 담당한 특수법령과 장기석, 심재철, 주진철 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 11.

법무부 법무실장 한 상 대

(서명)

● ● ● 목 차 ● ● ●

I.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1
1. 경제활동과 법·제도	3
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3
나. 계약의 자유와 책임	4
다. 경제활동의 주체	5
2. 사회·정치활동과 법·제도	10
II.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3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51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15
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16
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17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81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18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2
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본적지 변경	26
라. 북한이탈주민과 상속	28
마. 부부관계	29
III. 계약과 권리·의무(민사법 관계)	35
1. 계 약	37

가. 계약의 방식	37
나. 권리의 구체	38
2. 금전거래	9
가. 금전 차용	39
나. 차용증	40
다. 연대보증	41
3. 부동산 거래	2
가. 부동산의 매매	42
나. 인감증명	43
다. 부동산 임대차	44
4. 현명한 소비자	7
가. 소비자의 권리	47
나. 방문판매	48
다. 홈쇼핑판매	49
라. 신용카드 할부판매	50
바. 보 험	51
IV. 범죄와 처벌(형사법 관계)	53
1. 형사법 개요	5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55
나. 죄형법정주의	57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06
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	60

나.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64
다. 상해, 협박 관련 범죄	67
라. 경범죄	69
3. 형사사건 수사절차	Ⅶ
가. 수사의 시작	71
나. 수사의 진행	72
다. 수사의 종료	75
4. 형사사건 재판절차	Ⅷ
가. 재판	76
나. 보석	78
다. 형사사건과 합의	80
5.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Ⅷ
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Ⅷ

I.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I.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1. 경제활동과 법·제도

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A는 식당 운영을 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아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다. 국가에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 해답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 이유

우리사회는 자율경쟁사회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선택하고 경쟁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사회에서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실패했을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잘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배울 점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 어설픈 선택과 성실하지 못한 생활은 실패를 가져다준다.

나. 계약의 자유와 책임

A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건물주 B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가게를 빌려 사용(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업자 C로부터 배추 1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D에게 한달 이내에 김치 100만원 어치를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치공장 운영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계약을 포기하였다. 어떻게 될 것인가.

■ 해 답

A가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또, 농산물도매업자 C가 납품할 배추를 보관하고 있다가 납품하지 못하여 썩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D가 김치를 납품받지 못하여 장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이 유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과 만나 약속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단순한 사업을 하려고 하여도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을 법적으로 계약(契約)이라고 한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워주지도 않고 돈이나 물건을 대주지도 않으며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는다.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여 풀어가야 한다.

약속(계약)은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거나, 약속을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 계약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총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는 그 계약금을 되돌려 받

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배울 점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법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약속(계약)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속으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치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경제활동의 주체

(1) 공동사업

A와 B는 각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자 B는 A가 주도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잘못하여 실패하였으니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A는 B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 해 답

사례에서 A와 B간의 법적 관계가 분명치 않다. B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A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소, 소송 등 심각한 분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이 유

사례에서 A가 B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면, A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한 것은 A의 책임이고 A는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A와 B가 함께 돈을 투자하고 음식점 수입을 나누기로 하였다면, A

가 주도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음식점 운영의 실패는 A와 B의 공동책임이고 따라서 A는 B가 투자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 배울 점

개인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하면서도 그 사람들 간의 법적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것인지(단독사업), 공동사업을 하여 수입을 나누고 실패의 책임도 함께 지기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식회사 B의 주식 1,000만원 어치를 사려고 한다. 주식을 산 원금 1,000만원은 보장될 수 있는가. 주식은 무엇인가.

■ 결 론

주식에 투자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주식값이 오르면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것과 다르다.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株式)을 갖게 된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주(株主)라고 하는데, 주주는 주주들의 총회를 통해 사장을 선출하는 등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익을 분배 받을 수도 있다.

■ 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의 주역은 주식회사(株式會社)이다. 신문방송에 연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폭등했다느니 폭락했다는 등의 보도가 있다. 이것은 모두 주식회사의 주식(株式)에 관한 보도들이다.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여 만들어지는데,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주식회사로부터 주식(株式)을 받게 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株主)라고 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大株主)라고 한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이익을 배당받고 회사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식시장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주식회사의 주식은 사고 팔 수가 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 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보도는 주식의 매매와 그 주식의 가격에 관한 보도이다. 발전전망이 밝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이익의 배분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질 것이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주식값이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수출도 잘되면 대부분 주식회사들의 수익전망도 밝아지게 되고 주식값도 전반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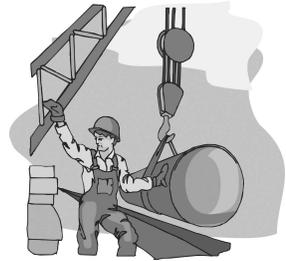
그러나 주식값은 급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고, 폭락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주식투자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

(3) 노동자

A는 기계공장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 구제받을 수 있는가.

■ 해답

A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사업주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다.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한 후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내린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전자민원코너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이유

사업주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노동자가 잘못했을 때 등의 경우에만 해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미리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위 사례에서 A는 잘못이 없고, 위 기계공장의 경영사정이 매우 나빠져 해고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또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자 관련 법률제도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 취 직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직장은 각각 일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 임 금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한 직장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모성보호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산후 4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도 있고 그 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복직된다.

◆ 실업급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

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직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되거나 기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을 잃은 후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곳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업신고 후 2주 뒤 다시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정치활동과 법·제도

북한이탈주민의 이익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거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

■ 해답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당에 정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한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나 우리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이유

우리 헌법은 모임을 만들 자유, 말할 자유(집회·시위,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단체, 노동조합, 언론사, 정당 등이 결성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며 각기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면서 조정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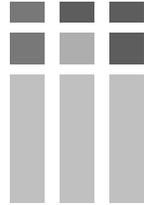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가장 기초되는 민주사회의 운영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말할 권리, 모임의 권리, 자유로운 경제생활의 권리 등)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모임은 허용되지 않고 처벌된다.

■ 배울 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각자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II.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 해답

호적부에 등록된 때부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 취적과 대한민국 국민

호적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호적부(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취적되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가.

■ 해답

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호적에는 가족들이 나타난다. 현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호적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사는 곳의 주소와 함께 사는 사람을 표시한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들과 다르다.

■ 해답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쉽사리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국민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 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배울 점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권리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A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해 답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 비보호결정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중국인 등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 비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취득방법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적판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우리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본적지(등록기준지)로 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면 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A는 북한에 배우자 B가 있는데, 남한에서 C와 혼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 답

북한에 있는 배우자 B와 이혼한 후 C와 혼인하여야 한다. 남한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A의 호적에 B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고 대한민국 법은 이중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혼의 절차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한다.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상대 배우자가 남한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한 특례규정이 새로 만들어 짐으로써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A는 남한에서 소송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남편이 탈북하여 남한에 와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해 답

남한에서 한 이혼은 유효하다. 다만, 자녀의 양육권은 다시 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 이 유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혼은 적법하고 남편이 이혼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부모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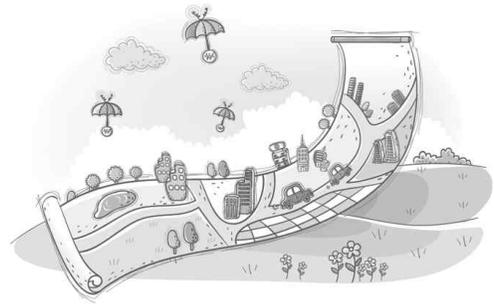
A는 북한에서 이혼하였는데, 남한의 호적에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 답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호적 정정의 방법을 알아보자

남한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실수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인 경우에는 그 호적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호적의 정정은 본적지(등록기준지) 법원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등록대장에는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록대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원 등록대장의 내용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A는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인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였다. 중국인 B와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 수 있는가.

■ 해 답

조선족 중국인 B와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A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 이름의 신분(호구)을 사서 중국인 B와 결혼등기를 하였다. A는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인 B와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한다. 한국에서 중국인 B와 이혼하여야 하는가.

■ 해 답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따로 이혼할 필요가 없다.

■ 이 유

혼인은 혼인신고(중국에서는 결혼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A이름으로 혼인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이 법적으로 따로 이혼할 필요는 없다.

A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 C 이름의 신분(호구)을 사서 중국인 B와 결혼등기를 하였다. B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는가.

■ 해 답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하고 A이름으로 혼인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는 혼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즉 A와 B는 부부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부생활을 하려면 새로 국제결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려면 A와 B는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 B는 중국 호적상 C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시 A와의 결혼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는 중국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C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중국에서 A와의 결혼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1) 혼인의 자녀의 입적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해 답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 혼인의 자와 입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의 자라고 한다. 아버지가 혼인의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다. 아버지가 동·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된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A의 전 남편 B가 탈북하여 남한에 와 있다고 한다. 전 남편 B에게 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 남편 B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 해 답

전 남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남편이 딸을 만날 수 없게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이 유

전 남편도 딸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법원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 남편도 딸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전 남편이 딸을 볼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면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성장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전남편이 아이를 볼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간의 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게 정할 수도 있다.

(3)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

A는 1999년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남자 B를 만나 2000년에 아이 C를 낳았다. 아이 C는 중국인 남편 B의 호적에 올라 있는 중국국적자이다.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살 수 있는가.

■ 해 답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아이를 출생신고하여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키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아이가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되고 국내에 입국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지위

국적법이 개정된 1998. 6. 14. 이후에 북한이탈여성이 낳은 아이는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다. 다만, 1998. 6. 14. 이전에 북한이탈여성이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만으로 한국인이 될 수 없고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아버지와 중국국적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1998. 6. 14. 전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 자녀의 입국

중국호적에 등록되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국인 자격으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여권과 일반 비자(초청, 여행 등)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중국에서도 취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취적한 후 중국여권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취적하지 아니한 채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는 방법에 따라 태국이나 몽골 등을 거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에서의 호적등록

아이를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면 어머니 호적에 입적된다. 나이가 많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도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의사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상에 어머니의 본명이 아닌 가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중국에서 그 가짜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실무상 통일부(하나원)가 그 입증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이를 알고 있는 증인들이 증명하여도 된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보호 문제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득하여 일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호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지역에서 태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4) 중국인과 사이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A는 조선족 중국인 남편 B를 국제결혼을 통해 데려왔고 남편 호적에 있던 아이 C도 데려왔다. 그런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한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 했더니 중국국적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처우신청을 하라고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해 답

중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한국에 입적된 자녀의 법적지위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는 법적인 한국국민이 된다. 또한 아이가 중국국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 이중국적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중국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에 입적한 호적증명서와 국적포기 신청서를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50-7 소재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하면 중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증명서를 주고, 그 국적상실증명서를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8세(남) 또는 22세(여)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본적지 변경

(1) 개 명



A는 자신의 이름이 특이하여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알려질 것 같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명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해 답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하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한다. A의 이름이 얼마나 특이한지, 그 이름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

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개명의 사유

바꾸고자 하는 이름과 이유를 적어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개명을 허가한다. 단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하기 어렵고, ‘분녀’ 등 이름으로 인해 놀림의 대상이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함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종전 이름의 사람과 새 이름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생활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본적지 변경

안성이 본적지로 되어 있는데,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 해 답

본적지 또는 새로 본적지를 정하고자 하는 곳의 동·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본적지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호주가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호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본적지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 등록기준지

그러나 2008. 1. 1.부터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된다. 등록기준지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성의 변경

A는 북한에 있는 남편 B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할까?

■ 결 론

현재는 불가능하다. 다만,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 변경허가의 기준

자녀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좋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 북한이탈주민과 상속

6.25때 월남한 부A가 사망하였고 A의 재산은 남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북한에 있다가 탈북한 자녀 B는 부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 해 답

탈북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 법적 문제들이 있다.

■ 상속의 범위와 권리행사 기간 문제

탈북 자녀는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처분되었다면 다른 상

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마. 부부관계

(1) 부부별산제

A의 남편 B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내인 A를 폭행하였다. A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다.
A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다. 어떻게 될 것인가

■ 해 답

집은 아내 A 개인의 재산이다. 남편에게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내 A가 남편 B 명의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집 명의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

■ 부부별산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개인 재산은 각자가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기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 다른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집을 남편 명의로 해둔 경우

A가 남편 명의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남편은 재산 취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므로 A가 그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자진해서 되돌려 주지 않으면 여러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해야 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산 것이며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가사일을 돌봤을 경우

남편이 최소한 가정살림을 돕는 등 내조하였다면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위 사례와 반대로, 남편이 돈을 벌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아내가 가정살림을 돕는 등 내조하였다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방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그 재산을 만들었지만, 다른 배우자도 가사일을 돕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배우자 명의의 문서 작성과 신용카드

A는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의류품을 사는데 사용하였다. A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신용카드는 무엇인가.

■ 해답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배우자 이름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남남이고 남의 명의의 서류를 동의 없이 함부로 작성하면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정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게에서 신용카드만 제시하면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상품을 판 가게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물건 값을 받는다. 그리고 사후(대개 한달 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물건 값을 달라고 청구하고 이때 카드소지자는 외상값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나중에 외상값을 갚을 수도 없으면서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외상값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카드 명의자가 외상값을 갚아야 되므로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부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혼의 사유

A의 남편 B가 바람을 피우고 A를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B가 이혼을 요구한다. A는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싶다. 이혼하여야 하는가.

■ 해 답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B의 이혼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협의이혼

A와 B는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즉 A가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부부가 직접 가서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동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 재판을 통한 이혼

A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B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쫓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이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B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A를 폭행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혼을 청구하였으므로 B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A도 결혼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식을 위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명분에 불과하며 단지 오기와 보복의 마음으로 이혼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A가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B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A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을 것이다.

(4) 배우자의 폭행과 대처 방법

A의 남편 B는 술을 마시고 아내인 A와 아이를 폭행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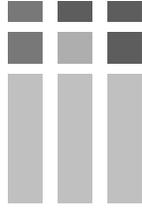
■ 해답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신고 받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을 막아

줄 것이다. 또한 보호신청을 하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도 있다.

폭행이 심각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남편을 자신의 거주지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 있으며 남편을 의료기관 등에 보낼 수도 있다.





Ⅲ. 계약과 권리·의무 (민사법 관계)

Ⅲ. 계약과 권리·의무

1. 계약

가. 계약의 방식

A는 이웃 B의 중고차를 1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조로 10만원을 주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A가 약속된 날에 나머지 90만원을 주면서 자동차를 요구하자 B는 계약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에 판 것이라 우기면서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는다. A는 어떻게 자동차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 해답

A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 이유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인 약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은 법에 의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재판을 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서면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배울 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일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정말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에 대한 계약인지, 돈에 관련된 계약이라면 돈을 어떻게 줄 것이며, 언제 줄 것인지 등을 적어야 한다. 특별한 약속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곳과 날짜,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해주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변호도 해주므로 이 곳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권리의 구제

A는 B에게 1,000만원을 꾸렸는데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B가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 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된다.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 해 답

B의 집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다.



■ 이 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에 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가압류라 하는데, 가압류된 집, 건물, 땅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물건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이 재산들의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울 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및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둔다.



2. 금전거래

가. 금전 차용

A는 사채업자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며 협박을 한다.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해 답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한다.

■ 이 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협박을 하는 사채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모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위와 같이 폭행·협박을 하거나 실제 이자와 장부상의 이자를 다르게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배울 점

사채업자가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나중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협박 전화를 녹음하거나 폭행행위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해둔다.

나. 차용증

차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나?

■ 해 답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① 빌리는 돈의 액수 ② 이자이다. 그 밖에 ③ 어디서 돈을 갚을 것인지 ④ 언제 갚을 것인지 ⑤ 갚아야 되는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적어둔다면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적고 싸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 놓는 것이 좋다.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공정증서 형식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 연대보증

A는 잘 아는 사이인 B의 부탁에 못이겨 B가 C로부터 돈을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줬다. 그런데 C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A는 돈을 갚아야 할까?

■ 해답

갚아야 한다.



■ 이유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이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지만 연대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과 똑같은 의무를 지고 돈을 갚을 의무에 순서가 없다는 점에서 돈 받을 권리를 쉽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인다. 원래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없어지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보통의 보증과는 달리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연대보증인은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은 경우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받아낼 수는 있다.

■ 배울 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충분한 재산과 신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보증을 서주도록 한다.

3. 부동산 거래

가. 부동산의 매매

A는 B로부터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이 과연 B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 해답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다.



■ 이유

집, 건물, 땅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표시 및 소유권, 담보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다른 사람에게 저장잡힌 물건은 아닌지, 가압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배울 점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알아둔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어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 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넓이, 용도, 구조 등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 ②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최초 소유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까지 순서대로 적혀 있다.
- ③ 을구에는 지상권, 저당권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로서 이에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실제 채무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에 가서 보거나 등본을 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를 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거래 계약 후에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인감증명

A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집주인의 처라는 B가 계약을 하러 나왔다. A는 B의 말만 믿고 B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 해 답

B의 대리권을 확인한다. 집주인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B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서면과 B의 인감증명을 요구한다.

■ 인감증명

인감증명이란 도장을 신고한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도장이 국가에 신고된 도장임을 행정관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권리자 본인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 부동산 임대차

(1) 대항력

A는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 B는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다. 새 집주인 C는 B로부터 세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A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A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

■ 해 답

A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이상 집을 비워줄 필요 없다.



■ 이 유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받는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영향 없이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즉, 남은 세를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 배울 점

셋집을 얻게 될 때에는 이사를 들어감과 동시에 동·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

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된다.

(2) 우선변제권

A는 2,000만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업을 부도내고 도망가버려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 A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 답

A가 실제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1,600만원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다만 집값이 3,2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 이 유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세 사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우선변제특권이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소액인 경우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우선하여 그 집값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00만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위 각 경우보다 많다면 이사를 들어가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세 사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 배울 점

셋집을 얻게 될 때에는 계약 전부터 이사갈 때까지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임차권의 보전

A는 전세 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A는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해 답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 이 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고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한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 사는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일 뿐 실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 배울 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먼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소송을 제기한다.

4. 현명한 소비자



가. 소비자의 권리

A는 백화점에서 체력단련기구 세트를 하나 사서 집에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체력단련기구의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면서 날카로운 이음새 부분에 다리를 다쳤다. A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을까?

■ 해 답

A는 다리를 다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체력단련기구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체력단련기구의 환불 등에 대해서는 백화점에 각 청구할 수 있다.

■ 이 유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하자’와 ‘결함’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자’란 물건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결함’이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제조물책임). 따라서 결함이 있는 체력단련기를 사용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 치료비는 체

력단련기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고, 불량품인 체력단련기는 이를 판매한 백화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나. 방문판매

A는 집에 찾아온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구입한 것이 후회되어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 해 답

A는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이 유

집이나 직장 등을 직접 찾아와 물건을 파는 경우를 방문판매라 한다. 이미 물건을 사기로 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생각해 본 후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 등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②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물건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3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 배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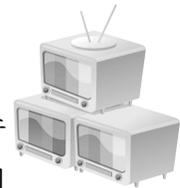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말만 듣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 보며 물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본 후 신중히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다. 홈쇼핑 판매

A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의류세제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달리 때가 잘 빠지지 않아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 해 답

A는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광고에서 본 내용과 달리 세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세제에 흠이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 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은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본건과 같이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배울 점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우편 판매,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

하는 경우 물건을 받자마자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흠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반품하도록 한다.

라. 신용카드 할부판매

A는 200만원 짜리 텔레비전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구입했다. 하지만 A는 변변한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계속 낼 능력이 없다. A는 구입을 취소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 해답

텔레비전을 사기로 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텔레비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유

물건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거래를 할부거래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물건의 내용 및 물건을 넘겨주는 시기, 물건의 가격 및 할부금액, 할부 회수 및 할부금을 내는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가격 및 할부기간이 적힌 신용카드 전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A와 같은 할부거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날), 또는 전표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 등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

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에도 서면을 통해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배울 점

신용카드 사용과 할부거래는 지금 당장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쉽게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중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대금 지급과 할부금 납입 압박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마. 보 험

A는 무조건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지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본 보험약관에는 여성 암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A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 해 답

A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 유

보험계약자(소비자)는 보험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처음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로부터 3일 이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회사 쪽이 보험약관을 주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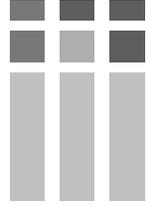
해 설명해줘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보험회사 쪽이 이러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의 경우와 같이 ‘여성암 제외’같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배울 점

보험 뿐 아니라 약관은 내용이 많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작아 이해는 커녕 일반인들은 읽기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판매자 또는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한다.





IV. 범죄와 처벌

(형사법 관계)

IV. 범죄와 처벌

1. 형사법 개요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전치 4주의 안면부타박상 등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A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법률전문가 C를 찾아갔는데 C로부터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너는 민사사건에나 신경써라” 라는 말을 들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해답

A는 B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의 행위가 범죄로 될 경우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민사사건이라 부르고, B의 범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부른다.

■ 이유

사회와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산에 관한 각종 분쟁이 생기고 사건, 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쟁, 사건, 사고는 법적인 관점에서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따라서 그 해결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손해배상 등을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하여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를 가리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형사법 체계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 등 형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형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 절차, 피의자와 피해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기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통칭하여 형사특별법이라 부른다.



나. 죄형법정주의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진 후 B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서에서 B와 함께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B로부터 “당신, 사고날 때 나에게 화를 냈지, 나 그걸로 고소할거야” 라고 말하였다. A는 단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것인가?

■ 해 답

형법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박하지 않는 한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A는 처벌받지 않는다.

■ 이 유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범죄의 종류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뇌물공여죄, 범인을 숨겨 주는 범인은닉죄, 법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범죄단체조직죄, 불을 질러 위험하게 하는 방화죄, 도로손상·점거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운반, 판매, 투입하는 마약 관련 범죄, 도박죄, 간통죄, 문서위조죄, 공연음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건축법」에 규정된 무허가 건축,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납치죄, 감금죄가 있고, 성범죄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도 이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범죄로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죄, 타인을 협박하여 물건을 갈취하는 공갈죄, 타인을 속여 물건을 편취하는 사기죄 등이 있다.

■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벌주려 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데 있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을 교도소라 부른다.

형벌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및 금고가 있다. 명예형으로서는 일정한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고 재산형으로서는 벌금과 과료가 있다.

■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차이

◆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 기본권을 중요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는 북한 형법에 비하여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낙태죄(자연분만기 전에 자궁 안의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협박죄(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음란하게 만지는 행위), 주거침입죄(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등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은 국가계획경제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행위), 계

획에 없는 제품생산·건설죄(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한 행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농업지도기관의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일반범죄불신고죄(살인, 강도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은 북한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

A는 직장 회식에 참여하여 소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의 허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는 사고 직후 겁이 난 나머지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쳤다. A는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

■ 해 답

A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각 단계별로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이 유

◆ 음주운전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죄 역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된다. 술이 약한 사람은 소주 1~2잔을 마신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측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인·대물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종합보험(택시·버스·화물트럭 공제조합 포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및 범칙금만을 부과받게 된다.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없으므로 차분하게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아래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 ①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 ③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⑦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 ⑨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 ⑩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사망사고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 구속·불구속의 결정, 선고 형량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불이행한 체 도망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해서 형사처벌

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면 우선 즉시 하차하여 법률적 의무사항인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부상자 또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와 상대방 차의 최종 위치를 표시하고, 차량의 손괴 상태,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상태 등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 구호의무, 신고의무의 철저한 이행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위와 같은 구호 조치를 하면서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위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 피해자의 상처 여부확인

- ②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통보
- ③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 ④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인적사항, 전화번호는 반드시 통보

나.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A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다단계판매업체인 '000네트워크'의 상품설명회에 참여하여 '000네트워크'의 대표이사 B로부터 많은 구좌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총 30구좌 합계금 990만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B는 "1구좌당 33만원을 투자하면, 후순위 회원 1명을 추천할 경우 후원수당으로 단계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추천수당까지 지급하여 최고 200%까지의 수당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중국에까지 투자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투자 직후 '000네트워크'로부터 적은 수당과 함께 쓸모없는 자석담요 등 물건을 받았을 뿐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알고 보니 당시 '000네트워크'의 회사 운영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 해 답

B가 운영하는 '000네트워크'는 회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징수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B

는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000네트워크'와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000네트워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유

◆ 다단계 사기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이 아닌 사례와 같은 다단계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회사 사무실을 꾸며 놓고 상품설명회를 빙자하여 회원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상품설명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기획실장, 홍보국장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그들은 복잡한 수당지급체계를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회사가 물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거래처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후순위 회원들을 추가로 가입시킬 경우 많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그들의 회사는 실제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회사 자체로는 아무런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일정 기간 회원들에게 적은 수당을 지급할 뿐 결국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도주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곤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설명회에 참여한 경우 일단 회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을 가져야 하고 거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망행위,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자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통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재화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역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사기죄 고소 관련 유의사항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전·재산에 관한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등 민사 분쟁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도 복잡하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손쉽게 받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은 있었지만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상해, 협박 관련 범죄

A는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탈북 브로커 B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부탁하면서 입국 성사 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B의 도움을 받아 결국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하였으나 초기 정착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바람에 정해진 기일까지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수시로 A의 집에 찾아와 “A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 해 답

B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는 수사기관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 일실수익(노동력

상실·감소로 얻지 못하게 된 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이 유

상해죄란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외상(外傷)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외상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한다. 폭행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공갈죄란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배울 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금전차용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 매매계약(물건을 파는 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찾아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서류를 보고 계약의 유·무효 여부, 권리·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해결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해, 공갈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라. 경범죄

A는 늦은 밤 술을 많이 마신 후 우울한 생각이 들어 버스정류장에서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당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3만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니 경찰에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A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 해답

A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조성 행위에 해당한다. A는 이로 인하여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법원에서 열리는 즉결심판 범정에 나가야 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이유

◆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경찰서장(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통고)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있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법적으로 통고처분이라 부른다)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범칙금 액수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에는 위반행위별로 2만원,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사례와 같은 불안감조성행위는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위반행위별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 ① 칼·쇠몽둥이, 쇠틀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니고 다니는 행위
- ② 허위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
- ③ 물품을 억지로 강매하는 행위
- ④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⑤ 길이나 공원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 ⑥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 ⑦ 기타 과다노출, 암표매매, 무단출입, 무단취식 등 행위

◆ 범칙금 납부 절차 및 즉결심판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통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3. 형사사건 수사절차

가. 수사의 시작

A는 평소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B는 A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겁이 나 밖으로 도망치다가 집 앞을 순찰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보호를 요청하였다. 경찰은 A와 B를 피출소로 데리고 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A는 경찰에게 “B가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라고 항의하였다. A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 해답

A의 범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찰은 B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항의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 이유

수사기관은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이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검찰청, 경찰서 또는 피출소로 데리고 간 후 피의자신문 등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 우연한 기회에 목격 등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 입건 및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 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범죄의 실행 중이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는데 현행범은 수사기관 또는 일반인 누구든지 체포영장 등 서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수사의 진행

위 사례에서 경찰은 A와 B를 상대로 조사한 다음 모두 귀가시켰다. 이후 A와 B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해답

A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어(기소) 처벌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불기소), B는 A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으로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이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방법으로 수사를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법경찰관은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강 수사하거나 또는 직접 재수사한 후 형사재판에 회부(기소) 또는 불회부(불기소) 처리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전화연락 등 방법으로 출석시키거나 체포한 후 진술

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듣는 절차를 피의자신문이라 한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자신의 범행 또는 억울함을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서류에 기재되고, 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다. 만약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조서를 수정하게 되고 피의자는 수정된 조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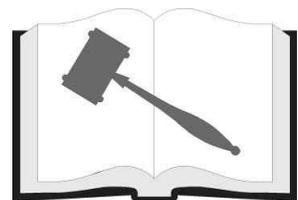
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역시 '참고인진술조서'라는 서류에 기재되며 조서내용의 확인 절차, 서명, 날인 등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정상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증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1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후에 법원은 피의자를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송 치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의 종국 결정을 내린다.

다. 수사의 종료

위 사례에서 담당 검사는 A와 B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보강 조사를 하였는데, A와 B는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검찰청 민원실에서 A는 B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B는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시하였다. A는 어떻게 될까?

■ 해 답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강 수사한 후 피의자의 전과, 범행 동기 및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유

◆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이 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혐의없음이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명수배를 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된 경우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4. 형사사건 재판절차

가. 재 판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수사기관의 수사 후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A는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이며, 본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교도소에서 1년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였고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 해답

피고인이 유죄 또는 형량 등에 관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한다.

사례에서 A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키 어렵다.

■ 이유

◆ 재판절차

검사가 정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법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유죄의 판결

재판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

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무죄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 상소제도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하여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가 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바뀔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게 적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상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보 석

A는 회사의 공금 3,000만원을 횡령한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A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3,000만원을 마련하여 회사에 입금하였고 회사 측과 합의를 하였다. A는 회사와 합의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어 하였다. A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을까?

■ 해 답

A는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후 보석을 허가할 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이 유

◆ 보석이란?

검사가 구속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내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 보석허가 청구절차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다. 형사사건과 합의

A는 직장동료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B는 A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A는 합의금 500만을 주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개월이 지나 A는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B는 이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 A는 법원에 찾아가 “어떻게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건이 처리됩니까?”라고 항의하였다. A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 해 답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를 강요할 수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 배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항의는 부당하며, A가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고소 이외에 별도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이 유

◆ 피해보상과 형사처벌의 관계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배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

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배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민원이며 위와 같은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다.

◆ 형사사건 합의의 효과

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란 범죄 중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②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다만, 합의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5.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B의 부탁을 받고는 B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A는 연대보증을 서기 싫었지만 B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집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연대보증을 썼는데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그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애시당초 소유한 집도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을 당시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 해답

B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A는 B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 고소는 어디에 해야 하나

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 고소를 하는 방식

고소인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원활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허위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무고죄란?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한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화집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 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A의 아들이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범 2명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열심히 수사하였으나 결국 도망친 강도범들을 잡지 못하였고 강도범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A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해 답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중장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액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는 자신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지급신청을 해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이 유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이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되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유족구조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 장해구조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007년 11월 일 인쇄
2007년 11월 일 발행

발행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 507-0314
FAX (02) 507-0315

인쇄 문중인쇄(주)
전화 (02) 503-7764~5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473-14